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57
----------	-----

2023년 2월 24일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오케

나. 제안일 : 2023년 2월 6일

다. 회부일 : 2023년 2월 9일

라. 상정일 :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

2023년 2월 24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숙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버스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, 자동판매기, 현금자동입출금기, 상품진열대 등을 규정하고 있고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

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버스승강장, 택시승강장,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을 규정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작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
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등만을 규정하고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버스표판매대는 누락되어 있음
- 따라서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 시설인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형평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조성준)

### 가. 조례안 개요

-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는 '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'과 「옥

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하는 ‘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에 따라 ‘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’ 등에 명시된 버스표판매대를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에 포함하되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해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도로법 시행령</u>」제55조제7호에 따른 버 스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.)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
## 나. 검토내용

### (1) 관련법에서의 규정사항

- 「도로법 시행령」에 따르면,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버스표판매대·구두수선대·노점·자동판매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상품진열대,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

한 공작물·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(붙임1. 「도로법 시행령」)

### 「도로법 시행령」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(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)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버스표판매대·구두수선대·노점·자동판매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상품진열대, 그 밖에 이와

#### 유사한 것

8.~11. (생략)
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**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(식물을 포함한다)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**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, 옥외광고물법 시행령)」 제17조에서는 ‘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
###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)」

제17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.

가. 철도역·공항·항만·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·조명탑·교통안내소·안내게시판·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

나.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·시계탑·교통안내소·관광안내도 및 게시판

다. 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·노선버스안내표지판·지정벽보판·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(「도로명주소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)

라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, 노면전차형식, 철제차륜형식, 고무차륜형식, 선형유도전동기형식,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,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.5톤 이하(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.8톤 이하를 말한다)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·도 장등이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. 다만,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.

- 현행 조례 제10조에서는 ‘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로 휴지통, 벤치,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도로점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‘버스표판매대’가 누락되어 있음
- 또한 현행 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(이하,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)」에 따르면 보도상영업시설물(이하, 시설물)은 ‘가로판매대’와 ‘구두수선대’로 규정하고 있으나<sup>1)</sup>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는 ‘버스표판매대’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포함되어있지 않음
- 이와 관련하여 2001년 「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」 제정 당시,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는 ‘가로판매대’, ‘구두수선대’, ‘교통카드판매대’로 규정하고 있었으나, 2007년 이를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로판매대의 정의를 “신문·잡지류·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”에서 “신문·잡지류·음료·과자류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·판매”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‘교통카드판매대’를 삭제한 바 있음

<p><b>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</b> [시행 2001. 7. 16.] [서울특별시조례 제03889호, 2001. 7. 16., 300201]</p>	<p><b>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</b> [시행 2007. 11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4581호, 2007. 11. 1., 일부개정]</p>
--	---

1) 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보도상영업시설물"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"가로판매대"란 신문, 잡지, 음료,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
3. "구두수선대"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
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보도상영업시설물"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</li> <li>2. "가로판매대"라 함은 신문·잡지류·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li>3. "구두수선대"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li>4. "교통카드판매대"라 함은 교통카드의 충전·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li>5. "도로"라 함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.</li> <li>6. "보도"라 함은 연석선,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)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</li> <li>7. "운영자"라 함은 도로점용허가(이하 "점용허가"라 한다)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·수익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/ol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보도상영업시설물"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(개정 2007.11.01)</li> <li>2. "가로판매대"라 함은 신문·잡지류·음료·과자류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·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 (개정 2007.11.01)</li> <li>3. "구두수선대"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li>4. 삭제 (2007.11.01.)</li> <li>5. "도로"라 함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.</li> <li>6. "보도"라 함은 연석선,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)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</li> <li>7. "운영자"라 함은 도로점용허가(이하 "점용허가"라 한다)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·수익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/ol>
--	---

- 참고로 2000년 기준,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가로 판매점 1,665개, 구두수선대 1,751개, 교통카드판매대 488개가 설치되어 있었음
- 시대가 변함에 따라 ‘버스표판매대’ 및 ‘교통카드판매대’의 수요가 줄었고 서울시 ‘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·정비계획’(건설행정과-58150, 2000.7.1.)에 따르면 현행 「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」 제정 당시 조례시행 3년후(2004.1.1이후)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10%, 교

통카드판매대는 매년 20%씩 감축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

< 보도상영업시설물 설치현황 ('00.07.01. '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·정비계획' 중) >

구 분	계	가로판매점	구두수선대	교통카드판매대
수 량	3,904	1,665	1,751	488
소 유 권 자		자 치 구	운 영 자	운 영 자

**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·정비계획(2000.7.1.)**

□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안 입법예고(2000.6.10)

조례시행 3년후(2004.1.1이후)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10%, 버스카드판매대는 매년 20%씩 감축정비

-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'22.10월 기준, 가로판매대 649개소, 구두수선대 854개소로 총 1,503개소가 있음(붙임3. 자치구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)
- 현행 「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」 에서 '가로판매대'의 정의에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추가하여 교통카드판매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현재 운영중인 가로판매대가 교통카드판매대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<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(단위: 개소, '22. 10월 기준) >

구분	총 계	가로판매대	구두수선대
수 량	1,503	649	854

(2)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

- 시티투어버스의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을 살펴보면, 서울시 관광산업과에서 서울시투어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운영기관 지원 및 관리, 버스노선 조성, 승차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시티투어버스 사업자 선정 후 민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서울시

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에서 한정면허 신청 및 교부를 통해 사업을 개시함

**< 시티투어버스 민간운영업체 현황(23.1월 기준) >**

업체	노선		면허기간	
서울시티투어버스(주)	4개노선	도심고궁(TOUR1)	광화문~광화문	'23.1.2.~'29.1.1.
		파노라마(TOUR2)	광화문~광화문	
		강남순환(TOUR3)	강남역~강남역	
		야간(TOUR4)	광화문~광화문	
(주)노랑풍선시티투어	2개노선	한강잠실코스	DDP~DDP	'23.1.2.~'29.1.1.
		전통문화코스	DDP~DDP	

- ‘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사업자 선정계획(관광사업과-4068, 2016.3.14.)’ 및 ‘시티투어모집공고문(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650호, 2016.3.24.)’에 따르면, 운영방식은 민간자율 경영으로 하고 시 재정 지원은 없으며 시티투어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추진하되, 다만 서울시가 발행하는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·마케팅 등을 비예산지원함
- 또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‘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’에 따르면 시설확보계획에 ‘운영사무실, 차고, 매표소, 차량확보계획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티투어버스 민간운영업체 선정시 매표소 설치 및 운영이 주요 과업내용으로 판단됨
-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티투어버스는 2개의 민간업체(서울시티투어버스, 노랑풍선시티버스)에서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매표소는 총 3개(중구 2개소, 강남구 1개소)가 운영 중임
- 중구에 위치한 광화문, DDP 시티투어버스 매표소의 경우, ‘「재미있는 서울(FUN, FUN한 SEOUL 100)」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사업 세부



추진계획(도시공간개선단-7342,2018.6.19.)’에 따라 시범대상 후보지에 선정되어 각각 1억 50백만 원씩 지원을 받아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및 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9.3월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임

- 강남구와 중구에 위치한 매표소 3개소 모두 해당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사용료는 도로법 제68조제1호2)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되어 감면받고 있음

### 〈 서울시티투어버스 매표소 현황 〉

	명 칭	자치구	상 세 위 치	노 선	운수사
1	광화문	중 구	태평로1가 63-1	도심고궁,파노라마,야경	서울시티투어버스
2	강남역	강남구	역삼동 816-1.건물앞 (메가박스/스타벅스 앞)	강남순환,파노라마	서울시티투어버스
3	DDP	중 구	을지로6가 18-226	전통문화,한강잠실	노랑풍선시티버스



광화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



DDP 시티투어버스 매표소

- 시티투어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에서 관리하고 연간 2,000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 관광객들에게 교통과 관광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또한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

#### 2) 「도로법」

제68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## 다. 종합 의견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는 ‘버스표판매소’와 「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‘교통카드판매소’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별시설물이 아닌 ‘가로판매대’로 통합되어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,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과 같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‘버스표판매소’가 일부 신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이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
-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의 경우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항의 ‘버스표판매대’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현행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‘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에는 해당되지 않아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음
- 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 제3조제11호에서 분류한 옥외광고물 중 ‘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<sup>3)</sup>’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로점용이 가능한 ‘버스표판매소’임에도 불구하고 ‘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채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를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, 유사시설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한 버스표판매소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공공시설물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를 추가하여 광고게재에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

3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옥외광고물법 시행령)」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1.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: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

-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“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.)”를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나,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인 보도상영업 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는 공익광고에 한정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하는 공공시설물로 현행 조례 제1호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, 도로점용이 가능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추가지정하지 않고 감축<sup>4)</sup>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물등의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락.**

**6. 토 론 요 지 : 없 음.**

**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.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**

---

4)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보행 및 보도환경을 위하여 기존운영자의 생존권 보장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특례지원(장애인·노숙인·의상자 등) 외에는 추가지정하고있지 않음.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57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2월 24일  
제 안 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 유사 공공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가 공익광고에 한정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버스 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)의 광고 게재를 허용하되 공익광고에 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현행 제1호의 “휴지통, 벤치,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(공익광고에 한정한다)”에 “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 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)”를 추가한다 (안 제10조제1항제1호 수정).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, 제2호부터 제6호는 현행과  
같이 한다.

- ① 1. 휴지통, 벤치,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(공  
익광고에 한정한다.)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  
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 
한정한다.)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휴지통, 벤치, <u>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(공익광고에 한정한다.)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「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.)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	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휴지통, 벤치, <u>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(공익광고에 한정한다.)</u>, <u>「도로법 시행령」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.)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1. 휴지통, 벤치,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(공  
익광고에 한정한다.)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  
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 
한정한다.).

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는 현행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휴지통, 벤치,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(공익광고에 한정한다.)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휴지통, 벤치, <u>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(공익광고에 한정한다.), 「도로법 시행령」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(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.)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